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38
----------	-------

발의연월일 : 2025. 12. 15

발 의 자 : 이해민 · 강경숙 · 김우영
차규근 · 손명수 · 이학영
김준형 · 이정현 · 한민수
한정애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함)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OTT의 급성장으로 국내 유료방송 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유료방송사업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만약 현행처럼 이용약관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지속 운영될 경우, 유료방송은 신규 상품 출시가 지연되어 시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음.

이에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전환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상품·서비스 출시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3항 삭제 등).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12호 중 “제77조제3항”을 “제77조제1항”으로,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7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7조(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①·② (생략)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 ④ ~ ⑧ (생략)	제77조(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1의2. (생략) 12. <u>제7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u>	제108조(과태료) ① ----- ----- ----- -----. 1. ~ 11의2. (현행과 같음) 12. <u>제77조제1항</u> ----- ----- <u>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u> ----- ----- ----- -----
12의2. ~ 28. (생략)	12의2. ~ 28.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